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심화·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759”를 “7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7”을 “668”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73조의2제4항 및 제73조의3제4항 관련)”을 “(제73조의2제4항, 제73조의3제4항 및 제73조의4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존속기한: 2028년 8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이하	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56. (생 략) <u>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u> <u>에 관한 사항</u> <u><신 설></u>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6.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u> <u>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u> <u>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u> <u>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u> <u>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u> <u>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u> <u>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u> <u>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u> <u>단”이라 한다)을 둔다.</u> <u>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u> <u>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u> <u>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u> <u>다.</u> <u>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u> <u>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u> <u>“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u>

다)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회의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
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
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9</u>	<u>760</u>	+1
•	•	•	
•	•	•	
일반직 계	<u>752</u>	<u>753</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7</u>	<u>668</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 205 - 2308